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언*

박찬걸**

국 | 문 | 요 | 약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 의한 성매매 광고행위의 처벌조항에 의하여 의율되고 있는데, ‘밤의 전쟁’과 유사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법기관에서도 동 조항에 의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의 완비라는 조건의 충족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잘 정비된 현행 법령을 실제로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성매매 관련 단속 및 수사의 법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사이버 성매매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적용 및 개정 논의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성매매 단속의 집행력 강화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함정수사 기법의 동원,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의 활용,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의 고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확대 시행 등과 관련된 논의를 결부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 단속 기법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궁극적으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포함한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 및 척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19.12.31.4.105>

❖ 주제어 :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조장 사이트, 밤의 전쟁, 성매매신고보상금, 함정수사

* 본고는 2019. 11. 8.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년 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법학박사).

I. 문제의 제기

지난 2019. 5. 22.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밤의 전쟁’ 게시판 관리자(방장) 21명, 대포통장모집책·현금인출책·자금전달책 15명 등 모두 36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이후, 2019. 7. 2. 서버를 개발·관리해 주고 매달 300만원을 받아 채긴 사이트 개발자를 체포하고, 2019. 8. 27.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자금총책을 검거하였다. ‘밤의 전쟁’은 전국 2,613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은 국내 최대 성매매 조장 사이트¹⁾라고 할 수 있는데, 회원수는 약 70만명, 1일 접속인원 10만명에 이르렀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일당이 대거 검거되자 이곳에 광고를 올린 2,613개 성매매 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할 것을 2019. 6. 5.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밤의 전쟁’ 사이트는 2015. 10.경 성행위 방식에 따라 오피, 안마, 건마, 풀싸롱, 키스방, 립카페, 휴게텔, 핸플, 파티쉬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전국 성매매업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여성 종업원 프로필, 서비스 요금, 이용 후기 등의 업소 정보를 상세히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이트이다. 동 사이트는 방장 선출과 해임 및 사이트 전

1) ‘밤의 전쟁’ 사례에서 등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성구매 후기 (웹)사이트, 밤문화 후기 사이트,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성매매 포털사이트, 성매매 알선·구매포털사이트, 성매매 알선·광고사이트, 유흥업소 정보 공유 사이트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기존의 용어를 재검토함으로써 향후 관련 용어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건대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용어 사용이 가장 적합한데, 특히 조장이라는 개념은 사전적 의미와 달리 현실 세계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성매매의 형태와 비교하여 보다 진화된 형태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방식을 취하고 있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범죄행위들이 ‘더’ 심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는 기기만 있으면 성매매업소의 형태, 위치, 연락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의 나이, 신체사이즈, 실제 사진, 가능한 성매매의 수위 및 이에 대한 기존 성구매남성의 후기 등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성매매를 보다 은밀하게 실제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소 실장의 경우에는 성구매남성에 대한 철저한 신원확인절차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관리도 보다 수월하여 영업을 지속·확장할 수 있는데 성매매 조장 사이트가 도움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광고·권유·유인·알선·구매 및 이에 대한 방조를 보다 쉬운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성매매 조장 사이트’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체 관리 역할 담당, 광고비 수수 및 관리 역할 담당, 운영진과 방장 연결 역할 담당 등을 운영진 및 운영보조자로 하며, 10여명의 개별 게시판 관리자(소위 방장 역할 담당)로 하여 운영되고, 일반 회원들은 등급을 나누어 이용실적 및 후기 작성 내용에 따라 등급을 상승시켜주고 일정 등급이 되면 성매매업소 무료 쿠폰을 교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운영비는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비(각 업소들로부터 월 30만원 내지 100만원)를 받아 충당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일반회원에서 출발하여 2016. 7.경부터 건마방장, 2017. 9.경부터 안마 방장 및 전체 게시판 방장, 2018. 10.경부터 경기휴게 방장 등의 역할을 하였고, 동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이벤트를 관리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B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일반회원에서 출발하여 2016. 3.경부터 방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 6.경부터 전체 사이트 관리 역할까지 겸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총 2,177개의 성매매업소에 관하여 성매매여성의 누드사진과 동영상 및 프로필, 업소 위치, 연락 전화번호, 영업형태, 가격 등의 사항을 게재하고, 사이트 내 후기 게시판에 업소 무료이용 쿠폰과 같은 상품을 걸어두어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자들의 이용 후기를 자세하게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대가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는 성매매처벌법상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운영진의 행위의 가벌성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2항(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는데²⁾,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방조범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높은 점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 의한 성매매 광고행위의 처벌조항에 의하여 의율되고 있는데, ‘밤의 전쟁’과 유사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법기관에서도

2) 대전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9고단1079, 2019고단1913(병합) 판결.

동 조항에 의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의 완비라는 조건의 충족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잘 정비된 현행 법령을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성매매 관련 단속 및 수사의 법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사이버 성매매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적용 및 개정 논의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성매매 단속의 집행력 강화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함정수사 기법의 동원,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의 활용,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의 고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확대 시행 등과 관련된 논의를 결부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 단속 기법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궁극적으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포함한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 및 척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II. 효과적인 함정수사의 활용방안

1. 함정수사의 필요성 및 허용요건

가. 함정수사의 필요성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대상범죄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종류의 범죄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통상의 수사방법으로 사실해명이 어렵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건에 한정되어야 하고, 재산범죄나 폭력범죄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허용할 수 없다. 즉 함정을 사용해서라도 범죄인을 검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범죄의 특성상 함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인정되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정의 방법 중에서 피고인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기법을 사용한다면 비록 합정수사일지라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합정수사의 기법을 동원하면 범죄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성매매 관련 범죄의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도 동시에 확보³⁾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성매매 범죄에 대한 합정수사를 제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성매매의 영역에 국한하여 합정수사를 동원하자는 견해⁴⁾도 있기는 하지만,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 알선범죄는 그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크므로 동 영역에 대한 합정수사는 현재의 실무와 같이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합정수사 방식의 검거가 실제 이루어진 다음 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합정수사의 기법을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활용한다면 이는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소수의 집중된 합정수사를 통하여 다수의 잠재적 성구매자 및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막강한 위하력 및 일반예방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성매매업소가 집중적인 합정수사의 단속대상이라는 점을 인지시킨다면 사이트의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합정수사의 허용요건

위법한 합정수사와 적법한 합정수사의 구별은 수사기관에 의한 기망행위의 한계를 과연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판단기준의 정립이 필요한데, 판례가 제시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3) 同旨 김한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형사법의 신동향 제42호, 대검찰청, 2014. 3, 50면.

4) 이성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률적 규제방안”,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4, 306면(“합정수사의 기법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극적인 유도가 아니라 소극적 대화참여를 통한 단속을 시도하는 형태라면 사회적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종류의 범죄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마약범죄, 성매매범죄, 밀수범죄, 뇌물범죄, 장물범죄, 조직범죄, 도박범죄 등과 같은 합의에 의한 범죄 또는 피해자 없는 범죄는 당사자 상호간의 의사합치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없어 수사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인의 검거와 증거의 수집이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후에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피의자를 미리 수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특수한 범죄들의 경우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수사방법으로는 그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함정수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함정수사에 있어서 유인의 경위 내지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근시일 내에 당해 범죄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인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제보·첩보·풍문·기사 등을 통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公所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⁶⁾

2.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활용한 함정수사

실제에 있어서 성매매의 단속업무는 주로 수사기관이 성구매남성으로 가장하여

5) 박찬걸,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0, 236면.

6)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64 판결.

잠입한 다음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단속팀이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⁷⁾ 즉 범행계획과 범행실행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지만, 범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대상자로 신분을 가장하고 범죄의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응함으로써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의 사업주가 업장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 나온 남성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접대부로 하여금 음주 이후에 근처 숙박업소로 옮겨가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하자마자 단속 경찰관에 의해 즉시 체포되고, 그와 같은 성매매알선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례들에서 사업주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⁸⁾ 또한 대법원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들여보냄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였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를 이유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기도 하였다.⁹⁾

위와 같은 실무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함정수사에 활용하는 기법은 해당 사이트를 활용하는 역발상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즉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는 실제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첩보나 내사자료로 수사기관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매매업소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연락이 가능한 업소 실장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소의 위치, 운영형태, 성매매여성의

7) 한편 경찰이 성구매자로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는 경찰관이 오히려 단속을 빌미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것이므로 단속방법의 획기적인 전환과 제발방지를 위한 내부지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로는 장명선,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12, 137면. 하지만 동 견해는 경찰이 성매매여성과의 사이에서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단속을 행한 2건의 케이스를 근거로 주장된 것이므로 일반화시키기가 다소 애매하다. 당연히 성행위 이후의 단속은 그 자체로서 이미 함정수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적법한 함정수사는 성매매수사의 중요한 기법이 됨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0. 선고 2015고정387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울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단1178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759 판결.

규모 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성매매 수사방식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검거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되는 것인데, 이제는 수사기관이 더 이상 성매매업소 주위를 잠복하거나 관련자료 등을 수소문하여 입수할 필요 없이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성매매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활용하여 수사 및 검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적법한 함정수사의 요건 충족이라는 순기능도 도출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이론 및 판례¹⁰⁾에 의하면 단순히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아무런 첩보나 제보 등이 없이 특정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위법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매매 관련 사전 정보의 입수인데, 이를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이트 내의 후기를 통하여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 광고의 정보를 통하여 성매매업소에 성구매 남성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실제 업주 등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수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재직증명서, 신분증, 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성구매남성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¹¹⁾ 이러한 차원의 일환으로 성매매 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해당 자료를 서로 매매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성구매남성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의 전화번호 등도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한번 노출된 단속 경찰관의 전화번호는 관련 업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변경해 주거나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단속경찰관은 위장된 신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위장된 신분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부진정문서의 작성을 허용할 필요성도 있다. 외국의 입법례 가운데 이를 허용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1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11) 성매매업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서 사이트의 존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건전한 업소인 것처럼 되어 있는 곳도 실제 손님 사이트를 통한 사전예약만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a 제2항에 의하면, ‘위장수사관이란 부여된 신분변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사하는 경찰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은 이러한 변경된 신분으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성매매죄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의 문제

가. 현행법의 태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¹²⁾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상 성매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성매매알선업자와의 접촉이나 흥정 단계에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불합리가 존재하게 된다.

나. 외국의 입법례

성매매죄의 정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가운데 성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한 대가의 지급 내지 이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만으로도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국가도 존재하는데, 이는 성매매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섭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 형법 제7조의A 제1항(성판매자와의 성적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사람(성판매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제공

12) 현행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개념정의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으로는 박찬걸/정광진, “성접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안암법학 제53호, 안암법학회, 2017. 5, 435면 이하 참조.

하거나 이를 제한·약속한 자는 약식재판에 의하여 (a) 초범의 경우에는 E등급의 벌금형, (b) 재범의 경우에는 A에서 D등급의 벌금형에 처한다), 캐나다 연방형법 제 286.1조 제1항(장소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성적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목적으로 교섭한 자는 정식기소범죄로 처벌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약식기소범죄로 처벌될 경우에는 18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평 가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성매매죄의 구성요건을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래행위에 중점을 둔다면 성행위 여부나 성매매여성에게 집중된 성매매 수사를 전개할 필요 없이 성매매를 위한 금전 거래의 증거 내지 거래의 시도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¹³⁾가 있다. 하지만 성매매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조항을 신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매매죄의 미수범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미수범적 성격을 띠는 독립범죄로 상정할 경우에 있어서 그 법정형의 설정이 기존 성매매죄와 비교하여 쉽지 않다. 즉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의 법정형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법정형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존 성매매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전(前)단계의 불법성을 평가하여 법정형을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 성매매의 미수행위를 기수범화 시키는 형사처벌의 확장행위는 기존의 합정수사에 있어서 ‘미수의 고의’라는 적법요건을 상쇄시켜 성매매의 단속에 있어서 적법한 합정수사의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텍사스 주 형법 제43조에 의하면 성매매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실제 성행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따라 합정수사를 실행 중인 경찰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¹⁴⁾

13) 윤덕경/장다혜, “성매매알선 및 수요차단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아일랜드·캐나다·미국의 입법내용 및 과정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12, 231면.

14)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김한균, 앞의 논문, 48-49면.

Ⅲ.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의 활용방안

1. 기존 성매매 수사방식의 문제점

가. 일부 단속 경찰과 업주와의 유착관계

풍속업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해당 관할지역의 성매매업소에서는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위 ‘관 작업’이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일명 ‘수금책’과 ‘브로커’를 사이에 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금책은 전직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대부분인데, 자신이 담당하는 업소 5~6곳을 돌며 단속 경찰에 상납할 금액을 받아내고, 수금책이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다음 단계인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비밀리에 단속 경찰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식이다. 업주들은 수금책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당연히 브로커를 통해 상납받는 경찰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이다.¹⁵⁾ 이에 따라 일제 단속 전 단골손님만 받으라고 조언하는 경우,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 나가는 경찰관 휴대전화 번호를 예약 손님 번호로 가장해 미리 알려주는 경우, 설사 단속에 걸려도 업주가 내세운 바지사장만 입건하는 경우, 경찰관이 직접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성매매를 무마하는 경우 등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나. 단속과 수사의 이원화

2004년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 수사는 여성청소년기능에서 담당하였으며, 기존의 생활질서 풍속기능에서도 성매매를 단속하였다. 이후 2010. 10. 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활질서과장 사무분장 가운데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을 ‘풍속·성매매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으로 변경하고(제8조 제4항 제1호), 여성청소년과장 사무분장 가운데 ‘성폭

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14734&plink=ORI&cooper=DAUM

력·성매매에 관한 업무’를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로 변경하였다(제8조 제5항 제4호). 이와 같이 2010년 이후 성인 성매매 단속이 여성 청소년기능에서 생활질서기능으로 이관되었고¹⁶⁾, 성인 성매매 수사는 수사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성매매업소의 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하고, 수사는 형사과 등에서 하여 성매매 단속과 수사가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은 단속부터 수사까지 하나의 주체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단속 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성매매 단속 전담경찰관을 수사경과 경찰관으로 배치하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수사방식의 개선방안

가.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의 필요성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성매매업소의 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하고, 수사는 형사과 등에서 하여 성매매 단속과 수사가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 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¹⁷⁾ 2012년 소위 이O백 사건 이후 2012. 8. 1.부터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광역 풍속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일원화하여, 현장 단속시 실제 업주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다. 현재 광역 풍속수사전담팀은 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사건, 대형업소 관련 사건, 실업주 추적수사, 불법 수익금 몰수 및 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성매매업소를 광고 및 알선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통

16) 한편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은 풍속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성매매 단속활동에만 전념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성매매 단속을 전담한다는 표현 보다는 풍속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단속을 병행한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 그러므로 성매매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17) 송봉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성매매알선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집 제3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9, 54면.

하여 오프라인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찰서 단위의 오프라인 성매매 단속의 수사관행으로는 정해진 관할권의 문제, 관할 이외 지역의 수사협조 등의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단속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정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경우 전국적인 단위로 성매매업소를 직접 연결시켜주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여러 경찰서별로 관할이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경찰서 단위의 성매매 단속업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경찰청에 업무분장의 하나로 편제되어 있는 사이버수사대는 ① 해킹, 바이러스 등 유포사범 수사, ② 도박사이트 등 유해사이트 수사, ③ 전자상거래 사기 등 수사, ④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 비상사건 수사 등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유해사이트 수사의 하나로 편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도박사이트에 추가하여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별도로 명시하여 독립된 업무편제로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밤의 전쟁’ 사이트 수사 및 관련자 검거과정을 보더라도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체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일선 관할 경찰서에서는 관할구역 내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현장단속을 지휘 받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결국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단속 및 관련자 검거는 경찰서 단위의 수사가 아니라 지방경찰청 단위의 전담팀에 의한 기획수사가 적절한 기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설사 도 단위의 관할 문제로 협조를 구하는 경우에도 관할권의 제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상시적인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사이버 성매매 단속에 효과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단속과 수사가 일원화된 광역 풍속수사전담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특히 성매매의 검거인원이 많은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지방경찰청에는 수사팀의 인원증설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성매매 조장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모든 후기를 일일이 검색하여 죄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이버 성매매 수사를 위한 전담팀의 필요성을 역설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심지어 현재의 지방경찰청 단위의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그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인하여 수개월간 소수의 인원이 사이트 검색에 매진하는 수사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밖에도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통하여 실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성매매업소에 대한 검거 및 재판 결과 등에 대한 결과물 내지 통계자료는 반드시 경찰청의 보도자료 또는 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널리 공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정보를 광고하거나 유인된 성구매남성을 성매매로 알선하는 행위는 곧바로 수사당국의 내사대상이 되며,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여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확립시켜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성매매업소에 의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궁극에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수익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어 사이트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단속 경찰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대책

경찰은 성매매 단속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업주와의 접촉금지를 위한 사전·사후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성매매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업무 배치시 업소와의 유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1년 마다 교체되며 1년 연장을 위해서는 청렴도 등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매매 관련 업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순환배치는 합리적이지 않다. 단속 노하우나 정보 공유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경찰서 단위별 단속 가능한 인력의 부족현상도 고착화되어 있다. 비리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풍속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경찰관들은 잠재적인 비리나 부패의 온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와중에도 일선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전념하고 있는 다수의 경찰관들을 생각하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리나 부패의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실제 비리나 부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관련된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에서부터 강력한 징계처분을 동원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 보다 나은 제재수단이 될 것이다. 즉 현재의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관대한 것에 비리의 재발요인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할 지역 유흥업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적절한

단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와의 유착비리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단기적·주기적 교체는 단속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인사지침은 풍속업소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담당 경찰들의 사기저하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성매매(야간) 단속업무라는 것이 다른 범죄의 단속과 달리 투입되는 노력에 비하여 도출되는 성과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담당 경찰들은 상당한 업무스트레스와 애로사항 등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독려하기 위하여 승진 및 특진의 혜택, 선호 부서로의 보직 전환, 추가 인센티브의 제공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성매매 관련 수사에 대한 특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담당 경찰관들의 성매매 단속의지는 매우 강화될 것이며, 이는 집행력을 제고하는 결정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IV.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 등 기술적 조치의 활용방안

1. 역외 압수수색의 활용방안

가. 필요성

디지털 정보는 사이버 수사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서버¹⁸⁾에 대한 압수수색이 요구되는데, 인터넷 서비스가 국제화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경우 단속 및 접속차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

18) ‘서버’는 물리적인 서버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논리적인 개념이며,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서버가 구동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 하나의 서버가 구동될 수도 있다.

한 해외 서버 차단은 상당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국가 간 사법관할의 문제로 인하여 신속한 집행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이행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소멸될 우려도 상당하고, 설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거친다고 하여도 해당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도 담보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밤의 전쟁’ 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의 수사당국 간 협조를 요구하였지만, 당해 국가의 실정법 위반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성매매 조장 사이트가 성매매처벌법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사이트가 유통되는 주된 경로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글 등의 계정이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에는 현실적이고도 법률적인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이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계정과 비밀번호가 파악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에서 해외¹⁹⁾ 서버에 접속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의 방법을 말한다.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는 모두 서버에 저장된다. 이와 같은 서버에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에 있어서 서버의 압수수색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서버의 물리적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와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기존의 압수수색 절차를 통한 증거의 수집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색하여 압수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이나 복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등이 소재하는 현실적·물리적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의 위치가 외국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이라는 우회적이고 장기적이지만 효과가 불확실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19) 특히 구글 서버의 경우에는 전 세계 14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매체가 위치한 장소를 정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

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압수수색의 방법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보된 피압수자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별도의 장소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컴퓨터를 통하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해외 서버에 접속한 다음 수색을 통하여 압수하는 방법인 소위 해외 서버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을 활용할 필요성²⁰⁾이 있는 것이다.

나. 허용 요건

압수수색할 범위가 개별적인 사용자 계정인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을 통하여 접속 하며²¹⁾,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같이 서버 자체가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서버의 관리자 계정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계정을 특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법하게 취득한 후 접속하여²²⁾, 접근 가능한 정보 가운데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무에서도 피압수자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등을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에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역외 압수수색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법관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계정 정보는 주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나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확보하는 방법과 악성코드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²³⁾ 특히 후자의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에서 ‘필요한 처

20) 우리나라 법원도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해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이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대용/김기범/권현영/이상진,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법조 제65권 제9호, 법조협회, 2016. 12, 149면).

2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22)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득하고, 피의자가 이메일 계정에 있는 자료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에 갈음하여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내에서 전문가의 참여 하에 해당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외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에 접속한 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무결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

23)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정대용/김기범/권현영/이상진, 앞의 논문, 146-147면.

분'에 해당할 수 있다. 계정 정보가 확보된 이후에는 해당 서버에 접속하여 매체반출이나 하드카피·이미징의 방식을 통한 증거의 압수가 아니라 수색을 통하여 열람한 정보를 직접 출력하거나 수색에 이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별도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압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는 해외에 소재하는 서버를 수사기관이 침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압수자인 계정 소유자의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타국의 영역에 대한 물리적 진입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 국가의 주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이버 수사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사방법이라고 평가된다.

2. 사이트 접속차단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18. 7. 9. 회의를 열고, 2018. 5. 16.부터 2018. 6. 8.까지 실시된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장마사지를 가장하여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총 187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하였다. 접속차단된 성매매 조장 사이트들은 '출장마사지'를 가장하여,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 가격·연락처, 성매매 종사자의 사진·나이, 신체사이즈, 성매매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특정업소의 경우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 15개의 도메인 주소를 동시에 사용하며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⁴⁾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여러 개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여 수시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적발이 어려운데, 이와 같이 도메인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경우는 복제가 비교적 간편하고 손쉽게 배포할 수도 있으며, 업로드 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웹사이트를 여러 개 복제해서 회원에게 홍보할 수도 있다. 심지어 특정 사이트는 접속과 동시에 주소가 변경되어 다른 주소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 마비, 도메인 주소 차단, 서버 폐쇄 등의 순으로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원천적인 차단조치 보다 사이트의 이용

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중점심의 결과 발표”, 2018. 7. 9.

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수단도 선제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사이트에 대한 DDos공격, 자동전화발신 시스템 공격, 맵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등이 그것이다.²⁵⁾ 사이트에 대한 규제나 차단은 장시간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에 비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성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단이 이루어진 후에는 동일한 유형의 사이트가 도메인만을 변경하거나 서버를 변경하여 또 다시 유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통하여 차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성매매업소 연결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성매매업소 실장의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 대부업법 제9조의6,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광고 및 알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6. 1. 27. 신설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 의하면,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7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는 기존에 성매매 광고전단지에 의한 홍보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동전화발신 시스템에 따른 공격행위(동시에 트래픽을 걸어 전화연결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를 통하여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3초 간격으로 성매매업소 실장의 전화번호로

25)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송봉규,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한국의 성구매자 분석: 성구매 후기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12, 136-137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전화번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성매매 광고전단지에 의한 홍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여성가족부라는 단일한 부서에서 이를 전국적인 단위로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V.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용방안

1.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의의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4호, 제18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2004. 3. 22.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통하여 도입된 이후, 2013. 4. 5. 타법개정으로 인한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신고대상인 동법 제18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는 대신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새롭게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는 일정한 유형 내지 범위의 성매매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촉진·장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의 단속과 처벌은 주로 수사기관의 의지 내지 역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수사실무에서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성매매 현장을 직접적으로 적발하여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매매 관련 범죄의 증거는 간접증거로써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인데, 그리하여 수사기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단속실무에 있어

서 일정한 성매매 범죄행위에 대한 외부적인 감시의 눈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성매매 관련 범죄의 수사과 처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이윤동기를 부여하는 이른바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²⁶⁾

2.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

가. 신고대상범죄군의 확대

1) 현행법의 문제점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2004. 9. 23.부터 2019. 11. 23.까지 약 15년이 지난 동안 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매매신고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2. 3. 23. 2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단 1건이 존재할 뿐이다. 이는 현행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도입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원인은 특정한 유형의 성매매 범죄행위에 지나치게 국한되어 있다는 범위의 협소성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즉 성매매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부터 제23조에 규정된 모든 형사처벌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질의 경중 및 신고의 활성화 독려 차원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범죄에 한정하고 있는데,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이 행한 일정한 유형의 성매매 관련 범죄(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동법 제18조 제3항 제4호, 동법 제18조 제4항 제2호), ② 성매매처벌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행한 범죄(성매매처벌법 제22조), ③

26) 박찬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5호, 대검찰청, 2014. 12. 34면.

27) 박찬걸,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2, 372면.

업무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범죄(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4항 제1호),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범죄군은 성매매범죄로 분류되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제28조에서 성매매신고대상범죄를 규정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통하여 근절하기 위한 범죄는 형식적으로는 성매매범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 등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²⁸⁾ 특히 성매매처벌법에서 신고대상범죄로 설정하고 있는 총 4가지 유형의 성매매 범죄행위는 그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불리 입증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큰 해를 자초할 염려까지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는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입증하여 신고하라는 요구는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기본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²⁹⁾ 또한 단순성매매죄의 처벌조항인 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미수범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제2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국회에서도 성매매신고의 대상범죄군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 2009. 11. 30.자 임두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6783)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9.자 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9304)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16.자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8620)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2013. 9. 12.자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6803)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총 4건의 개정안은 모두 제18대 국회(3건) 및 제19대 국회(1건)에서 논의되다가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폐기된 것인데,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발의된 개정안이 총 4건³⁰⁾에 불과한 실정은 입법부의 성매매정책에

28) 박찬걸, 앞의 논문(각주 26), 49-50면.

29) 박찬걸,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343면.

30) 참고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정역 1년당 1천만원

대한 무관심과 방임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게다가 성매매처벌법은 2011. 5. 23.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내용 개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성매매정책의 변화 및 개선에 대한 심각한 결손현상이라고 판단된다.

2) 개선방안

현행법상 규정된 다양한 성매매 관련 범죄군 가운데 어느 범죄까지를 신고대상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파악되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매매신고 대상 범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범죄의 법정형 비교를 통한 범죄의 경중, 현실적인 신고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 제1항). 이와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매수유인죄 및 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다른 유형의 성매매 관련 범죄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성매매강요행위 등(동법 제14조), 청소년성매매알선행위 등(동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태양 모두를 신고대상범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강요행위 등(동법 제18조), 성매매알선행위 등(동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태양 가운데 성매매강요행위 중 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에 국한된 영역에 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행위는 그 모두를 신고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태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성매매업소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해서까지 신고보상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이

용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주위의 건물관리자, 부동산 중개인, 지역 주민 등의 활발한 신고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前 단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일련의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대상범죄군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인 동법 제23조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신고대상범죄를 반드시 기수범에 국한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의 성매매범죄군을 신고대상범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³¹⁾

나. 성매매범죄 신고자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제8조). 이와 같이 총 3가지 유형의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분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에 의하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문의 규정상 성구매남성이 성을 사는 행위로 나아가야만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구매 미수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반대해석상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성매매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남성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일반 남성으로 판정(?)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성매매의 증거를 수집한 다음 신고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설정된다면 해당 업소의 영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에서 예비 성구매남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 알선업자로 하

31) 박찬걸, 앞의 논문(각주 26), 56-57면.

여금 신고를 노리는 유인 내지 기망이라는 불안감을 증폭시켜 사전에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성매매처벌법상 일정한 유형의 성매매행위가 신고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언론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된 성매매 신고보상금의 활용실적이 지난 15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는 얼마나 이에 대한 홍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의 대부분이 신고보상금 제도와 관련된 현 상황에서, 아무리 법령을 완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현행법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는 수사기관의 합정수사만으로는 성매매의 단속에 상당한 인적·물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과 달리 일반 사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직역에 종사하는 자는 성매매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³²⁾ 특히 서울특별시 2011년부터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여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에 대한 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2003년 개소한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자인권보호 및 성매매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등과 같은 협의체 및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다. 신고보상금의 하향조정

1) 현행법의 태도

32) 박찬걸,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2, 104면.

현행 성매매처벌법령에 따르면 보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은 최고 2천만원, 최고 1천만원, 최고 7백만원 등의 이내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의 정확성, 당해 사건의 적발과 적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 범행 적발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몰수·추정될 범죄수의 등의 액수, 신고로 인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여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는 보상금 지급의 여부가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재량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상금액도 재량에 의하여 유동적일 수 있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에 의하면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참조), 포상금 지급의 여부가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처벌법상의 제도와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범죄인 경우에는 70만원, 동법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참작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개선방안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일반국민에 의한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신고의 유도를 위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상의 보상금액이 청

소년성보호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조직범죄, 인신매매범죄, 마약범죄 등과 관련된 성매매범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신고대상범죄를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한다면 보상금액을 보다 적게 책정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신고보상금의 적정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상의 신고대상범죄에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범죄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면, 보상금액의 상한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반드시 하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포상금지급방식과 같이 일률적인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다만 현행 성매매처벌법상의 신고대상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보상금액의 편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신고보상금 지급의 의무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신고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충분한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범죄로 인하여 생긴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몰수·추징한 재산의 일부를 제28조의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형식의 조문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2008. 10. 20. 개정된 성매매처벌법 시행령을 통하여 폐지된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성매매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당시 성매매신고보상의 건수가 전무한 상황에서 동 위원회가 폐지되었지만,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예방교육의 내용 가운데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제2호)에 반드시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교육·홍보할 필요성이 있다.³³⁾

33) 박찬걸, 앞의 논문(각주 26), 58-59면.

Ⅵ. 글을 마치며

성구매자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통하여 업주와 직접 접촉을 하게 되고 업주는 연결된 남성을 성매매여성에게 연결시키는 구조로 인하여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성매매여성은 업주나 중간관리자 심지어 동료 성매매여성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접촉의 최소화 현상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고립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오피방에서 여성이 선택되는 과정은 대면 초이스가 아니라 인터넷 후기 게시판에서의 후기 또는 업주의 소개글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성매매여성에 대한 개별화와 고립화는 업주 측의 통제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된다. 또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성매매여성의 상품화 이미지 고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성매매 방식은 성구매남성이 성매매알선업자가 소개해주는 여러 성매매여성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통하여 선택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운영방식은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약하는 체계로 변모되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성구매남성은 성매매여성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하여 마치 하나의 상품을 고른다는 가벼운 쇼핑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안일하고 그릇된 인식은 결국 성매매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객체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며, 성구매남성이 제값을 치르고 구입한 상품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게 됨에 따라 성매매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행태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근절을 위하여 다각도의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도출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랜덤채팅을 통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채팅어플 또는 사이트 자체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제작되었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이상 앱이나 사이트 자체 또는 제작자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에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에 대한 광고행위를 노골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사이트 자체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트의 개발자나 운영자는 명백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처벌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수사당국의 의지 및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개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수사 당국이 수시로 사이트 폐쇄에 나서고 있지만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즉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활용하는 성매매업소 및 성구매남성이 존재하는 한 사이트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사이트의 폐쇄에 급급한 단기적인 정책의 시행 보다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업소의 알선고리나 성구매남성의 사이트 방문을 억제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한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형사법의 신통향 제42호, 대검찰청, 2014. 3.
- 박찬걸/정광진, “성접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안암법학 제53호, 안암법학회, 2017. 5.
- 박찬걸,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2.
- 박찬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형사법의 신통향 제45호, 대검찰청, 2014. 12.
- 박찬걸,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 박찬걸, “합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0.
- 박찬걸,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2.
- 송봉규,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한국의 성구매자 분석: 성구매 후기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12.
- 송봉규, “경찰의 성매매 단속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12.
- 송봉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성매매알선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집 제3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9.
- 윤덕경/장다혜, “성매매알선 및 수요차단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아일랜드·캐나다·미국의 입법내용 및 과정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12.
- 이성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률적 규제방안”,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4.

- 장명선,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12.
- 정대용/김기범/권현영/이상진,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법조 제65권 제9호, 법조협회, 2016. 12.

Suggestion to Strengthen Execution Power for Regulation of Prostitution-promoting Sites

Park, Chan-geol*

Legal regulations related with prostitution-promoting sites under the current law in our country are carried out using punishment clauses for advertisements according to Clause 20 of Punishment for Sexual Trafficking Act. And it was evaluated that an appropriate system was established in legally regulating prostitution-promoting sites like ‘War in the Night’ and it was actually confirmed that judicial authorities were punishing relevant illegal behaviors according to this clause. That said, the more important issue than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 of being perfectly equipped with legal system is how the current well-prepared laws are enforced properly. But the study believes what turns out as a severe problem is that in reality, crackdown and investigation related with prostitution are not conducted in a consistent way, whereas legal enforcement is done anyway. In other words, in order to prevent the promotion and spread of cyber sexual trafficking, discussion on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current law system is not enough, and what needs more in-depth discussion is how to strengthen execution power to regulate prostitution. We had better work out more effective skills to prevent prostitution, by discussing, for instance, the use of entrapment against soliciting for prostitution, further implementation of compensation for reporting prostitutions, consideration of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e for digital evidences, the use of taskforce team to investigate cyber sexual trafficking. Therefore, the next study is going to mainly deal with effective investigation skills to prevent and root out prostitution-related crimes including prostitution-promoting sites ultimatel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Ph.D. in Law.

❖ Key words: Prostitution, Punishment for Sexual Trafficking Act,
Prostitution-promoting Sites, War in the Night, compensation for
reporting prostitutions, entrapment against soliciting

